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21권 제3호(통권 제83호, 2010 · 가을호)

한국의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김 준 호** · 박 현 수*** · 박 성 훈****

국 | 문 | 요 | 약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개인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찾기 위한 일환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이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구문제를 도출하여 경험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개인수준에서 범죄피해 가능성의 필요조건으로 지적되고 있는 매력성(attractiveness), 노출(exposure), 보호능력(guardianship)과 개인범죄피해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지역수준에서 사회해체변인(주거불안정성, 비공식적 통제, 공식적 통제, 근접성)이 개인범죄피해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셋째, 개인범죄피해에 대한 개인적 변인의 영향력이 지역수준의 변인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위계선형모형(HLM)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개인수준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운데 '연령'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양식/일상활동 변인 중에는 주로 '노출'(늦은 귀가)과 개인범죄피해 간의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수준에서는 사회해체와 관련된 변인 가운데 '근접성'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공식적 통제'의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셋째, 지역사회의 특성과 개인적 특성 간의 상호작용 분석에서는 개인재산범죄에 비해 개인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등 폭력성 범죄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근접성'은 개인폭력범죄에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지역사회의 무질서나 범죄발생이 많은 것으로 인식되는 지역일수록 지역 그 자체가 개인폭력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지역적 특성이 다양한 개인적 특성, 예컨대 성, 연령, 혼인상태, 학력, 소득수준 등의 요소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폭력성 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 주제어 :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 사회해체이론, 근접성, 다수준 분석, 상호작용효과

---

* 이 연구는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를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회학박사(교신저자, kjh1029@korea.ac.kr)
*** 고려대학교 강사, 사회학박사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Ⅰ. 서 론

대부분의 범죄학 이론은 주로 가해자의 범죄성(criminality)이나 동기(motivation)에 초점을 맞추어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을 밝히고 검증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반면, 이론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범죄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루마니아 법률가인 멘델존(Beniamin Mendelshon),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법학교수인 헨티히(Hans Von Hentig) 등이 범죄 발생 상황에서 피해자의 역할에 주목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범죄란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궁극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사람이 범죄에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유발'(victim-precipitation)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울프갱(Wolfgang, 1957)의 미국 남부지역의 살인 연구에 적용되었고 그 제자인 아미르(Amir, 1967)가 강간 연구에 확대 적용하였으나, 페미니즘에 기반한 많은 학자들의 비판에 부딪쳐 이런 관점에 입각한 연구는 그 이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Meier and Miethe, 1993; Rock, 2000).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점차 '피해행위'로 전환되었는데, 중요한 계기는 공식통계의 한계점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일찍이 서덜랜드(Sutherland, 1939)를 비롯한 학자들은 공식통계의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범죄피해조사(victim survey)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범죄피해조사는 1973년 미국에서 대규모 조사가 실시된 이후 캐나다, 유럽 등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지역에 한정하였다는 한계는 있으나, 199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에서 첫 번째로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1994년부터 3년 주기로 한국형사정책연구에서 주관한 범죄피해조사는 총 8회에 걸친 시행 과정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우리나라 범죄피해의 실태와 발생 상황을 파악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처럼 공식통계를 보완하기 위해 출발한 범죄피해조사는 범죄피해의 실태 및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른바 범죄피해이론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범죄피해조사 자료를 근거로 일부에서는 기존 가해자 중심의 설명과는 다른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가설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론이 제시되는 등 가해자 중심의 이론에서는 배제되었던 중요한 요인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생활양식이론과 일상활동이론 등 범죄피해자의 다양한 특성에 관심을 둔 이론을 위시하여 지역사회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사회해체이론이 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개인 특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존의 가해자 중심이론이 범죄를 야기하는 개인 혹은 사회적인 요인에 관심을 두었다면 범죄피해이론은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적인 조건에 관심을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좁은 의미에서 피해 원인론이라고 간주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으나 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가해이론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 연구는 형사정책연구에서 수집한 ‘2009 전국범죄피해조사(KCVS)’ 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개인범죄피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찾아보려는 일환에서 출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일상활동과 범죄피해

1970년대 후반부터 일부 학자들은 경험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범죄피해가 사회적 집단(social groups)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Gottfredson and Hindelang, 1981; Hindelang, Gottfredson, and Garofalo, 1978). 또 다른 학자들은 범죄피해율이 거시적 사회변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범죄피해 현상을 인간생태학(human ecology)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Cohen and Felson, 1979; Felson and Cohen, 1980). 전통적인 범죄학 이론과는 달리 범죄피해 현상에 주목한 이들의 논의는 생활양식이론(lifestyle-exposure theory) 또는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으로 불리며, 이후 범죄피해 현상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시발점이 되었다.[1)]

1) 생활양식이론이나 일상활동이론 모두 어느 정도 유형화된 잠재적 피해자의 일상활동(routine

생활양식이론은 각 개인마다 성, 인종, 수입, 교육, 직업 등 사회적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expected role)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범죄피해와 관련지어 설명한다. 즉 선행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직업활동 또는 여가활동 등 생활양식(lifestyle)이 시간과 장소에 따른 범죄피해위험의 노출(exposure) 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의 접촉(association) 빈도에 영향을 주어 개인의 범죄피해 가능성을 결정하게 된다(Garofalo, 1987; 24-26). 예를 들어, 결혼한 가정 내에서 남자는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 하는 역할이 있는 반면, 여자는 집에서 아이와 남편을 보살펴야 한다는 전통적인 기대역할이 존재한다. 그로 인해 남자들의 바깥 활동이 더 잦아지고 그만큼 범죄피해에 노출될 확률 또한 높아진다는 논리이다.

또 다른 범죄피해이론으로서 일상활동이론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범죄피해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세 가지 핵심적 요소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코헨과 펠슨(Cohen and Felson, 1979)은 동기화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 적절한 범죄대상(suitable targets),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보호/감독의 부재(the absence of capable guardians)라는 세 가지 요인이 공간적, 시간적으로 수렴되는 경우 약탈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이들은 1960년부터 1971년까지의 범죄율을 비교하면서, 원거리 출퇴근 증가(가구의 분리), 여성가구주의 경제활동 증가, 가전제품(TV, 카세트, 개인컴퓨터)의 소형화·경량화, 여가활동의 증가 등과 같은 일상생활의 변화(가구중심활동의 감소)가 범죄기회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보았다. 특히 코헨과 펠슨은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범죄대상, 보호의 부재라는 세 가지 요소의 효과는 가법적(additive)이기보다는 승법적(multiplicative)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다. 즉 범죄는 동기화된 범죄자, 적절한 범죄대상 또는 보호의 부재가 각각 독립적일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화된 범죄자와 적절한 범죄대상과 보호의 부재가 '동시에' 존재할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Bursik and Grasmick, 1993: 72).

activities)이 잠재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가정하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생활양식이론이 사회적 집단에 따른 범죄피해의 차이를 설명하려 한다면, 일상활동이론은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변동에 따른 범죄율의 변화를 일상활동의 변화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Meier and Miethe, 1993).

생활양식이론과 일상활동이론은 범죄학 이론을 가해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의 시각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개념의 모호함과 방법론적 한계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Bursik and Grasmick, 1993; Miethe, Stafford and Long, 1987). 예를 들어, 적절한 범죄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는 매력성은 높은 수입으로 측정될 수 있는 동시에 수입이 높을수록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도 크기 때문에 수입을 잠재적 피해자의 매력(attractiveness)으로 볼 것인지 범죄피해로부터의 보호능력(guardianship)으로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모호성은 이론과 조사를 연결하는 측정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개념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 '근사변인'(proxy variables)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2)]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에서 제시된 개념들 간의 구분과 개념들 간의 관계, 그리고 개념과 측정 간의 연결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은 이후 구조적 선택이론(structural-choice model of victimization)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구조적 선택이론(Miethe and Meier, 1990)에서는 코헨 등(Cohen et al. 1981)이 제시한 범죄피해의 요인을 범죄의 기회구조를 만드는 '거시-동태적'(macro-dynamic) 요인과 특정한 범죄대상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미시-수준'(micro-level)의 과정으로 구분한다. 이들은 근접성(proximity)과 노출(exposure)을 '구조적'(structural) 요인으로, 매력성(target attractiveness)과 보호/감시능력(guardianship)을 합리적 개인의 '선택'(choice) 요인으로 구분하여, 구조적 요인을 '주어진'(predisposing) 조건으로 보는 반면 선택 요인은 피해를 '유발하는'(precipitating) 조건으로 보았다. 구조적 선택이론은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을 보다 정교화 하여 범죄피해의 '맥락 효과'(contextual effect)를 강조한 이론이다(Meier and Miethe, 1993). 왜냐하면 네 가

2) 이러한 비판에 직면하여 코헨 등(Cohen, Kluegel, and Land, 1981)은 수입, 인종, 직업 등이 어떻게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노출'(exposure), '보호/감시'(guardianship), '잠재적 범죄자와의 근접성'(proximity), '잠재적 피해자의 매력'(attractiveness), '특정 범죄의 고유한 특성'(definitional properties of specific crimes themselves)이라는 매개 변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들에 따르면(1981: 507-508), 노출이란 어떠한 시간과 공간에서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물리적 가시성(visibility)이나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을 의미하고, 근접성은 잠재적 피해자가 사는 지역과 잠재적 범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 간의 물리적 거리(physical distance)를 의미하며, 보호/감시는 범죄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사람이나 장치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의미하고, 매력은 잠재적 범죄자가 느끼는 물질적·상징적 보상의 정도뿐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의 저항력(inertia)을 의미한다.

지 요인은 같은 수준에서가 아니라 구조적 수준의 요인이 개인적 수준의 요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개인수준의 요인(매력성과 보호/감시능력)에 의한 범죄피해 가능성의 차이는 구조적 수준에서 높은 근접성과 노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다(Miethe and Meier, 1990: 246).

또한 구조적 선택 이론에서는 근접성, 노출, 매력성, 보호/감시능력을 범죄피해의 필요조건으로 간주한다. 달리 말해, 네 가지 요인 중 어느 하나가 없더라도 범죄피해는 일어나지 않는다(Meier and Miethe, 1993: 475). 범죄피해가 네 가지 요인의 승법적(multiplicative) 효과로 나타난다는 이러한 주장은 코헨과 펠슨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미드와 마이어는 범죄피해 이론의 방법론적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기존의 연구들은 핵심개념을 부적절하게 측정하였고, 독립변인의 효과를 검증하면서 통제변인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변인에 따른 다수준 효과의 분석에 실패하였다(Meier and Miethe, 1993: 484-489).

이러한 지적에 동의하면서 이 연구에서는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의 근사변인이 아닌 네 가지 요인(노출, 근접성, 매력성, 보호/감시능력)을 직접 측정하고, 다른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각 요인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독립 효과는 물론 상호작용 효과를 동시에 검증해 보고자 한다. 다수준 분석의 문제점은 사회해체이론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2. 사회해체와 범죄피해

쇼와 맥케이(Shaw and McKay, 1931)는 시카고 도시 지역 내 전이지대(the zones in transition)에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왜 비행율이 일정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는가를 경험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들은 비행율이 높은 지역은 가난하고(poverty), 사람들의 이동이 잦고(mobility), 인종적으로 이질적인(heterogeneity)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으면서, 이러한 특성을 '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라고 불렀다. 시카고 이외의 지역에 대한 이들의 후속 연구(Shaw and McKay, 1942)에서도 지역 사회의 해체적 특성과 비행율은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쇼와 맥케이의 사회해체이론은 범죄나 비행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지역특성을 주요 원인으

로 파악하는 거시이론으로 지역수준의 사회통제이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Kornhauser, 1978).

비록 사회해체이론은 비행율의 생태적 분포(ecological distribution) 차이에 대한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사회해체의 조건과 결과를 구분 짓는 데 실패하였다. 즉 사회해체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함으로써 사회해체가 지역사회의 비행을 유발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높은 비행율이 사회해체의 증거로 설명되는 동어반복(tautological)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Liska and Messner, 1999). 또한 사회해체이론은 방법론적으로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를 범한 것으로 비판을 받았다.[3] 이후 사회해체이론에 대한 재해석과 재조명은 버식 등이 주장한 체계이론(Bursik and Webb, 1982; Bursik, 1984; Bursik, 1988; Bursik and Grasmick, 1993)과 사회해체이론을 범죄피해에 적용한 샘슨의 연구(Sampson, 1983; 1985; 1987; 1991; Sampson and Groves, 1989)에서 비롯되었다. 샘슨과 울드릿지(Sampson and Wooldredge)는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을 기회 모델(opportunity model)로 간주하고 기회 이론의 요소는 모두 개인수준의 변인이라고 비판하면서 지역수준의 맥락 효과(contextual effect)를 고려해야만 "미시-거시 수준이 연결될 수 있다"(1987: 372-373)고 주장함으로써, 범죄피해와 관련한 이슈는 맥락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검증할 것인가에 모아졌다.[4] 이들이 사용한 지역 또는 맥락 변인은 기존의 사회해체이론을 측정하기 위한 변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 결과 종속변인(범죄피해 유형)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모형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3) 로빈슨(Robinson, 1950)은 집합적 자료(aggregate data)를 통해 개인수준의 원인을 추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버식(Bursik, 1988)에 따르면, 로빈슨이 모든 이론적 논의에 대해 집합적 자료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연구자들에게는 집합적 자료의 사용을 금기(taboo)시 하는 풍토가 생겼고, 이러한 경향이 사회해체이론의 쇠퇴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4) 예를 들어, 샘슨과 울드릿지(Sampson and and Wooldredge, 1987)는 가족해체 비율, 사회적 응집도, 실업률, 빈집 비율, VCR소유 비율 등으로 구조적 변인을 측정하였고, 스미스와 잘주라(Smith and Jarjoura, 1989)는 인종적 이질성, 인구밀도, 거주지 불안정성, 다가구주택 비율, 12-20세 인구비율, 한부모 가구비율, 지역평균수입, 사회적 통합도, 1인 가구비율 등을 지역 변인으로 측정하였다. 미드와 맥도웰(Miethe and McDowell, 1993)은 맥락 변인을 몇 가지 주요한 복합변수(composit variable), 즉 상업지역, 인종적 이질성, 사회경제적 조건/지역의 무질서로 측정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성식, 1998).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해체의 개념을 범죄피해를 설명하는 데 적용함으로써 개인 중심의 논의를 넘어섰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를 안고 있었다. 첫 번째 문제는 사회해체이론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동어반복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사회해체의 결과가 범죄피해를 유발한 것인지 아니면 범죄피해가 사회해체의 결과를 가져온 것인지에 대한 보다 분명한 설명력을 제공하지 못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론적 논의와 분석 간의 괴리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지역수준의 효과가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지역변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개인변인을 통제한 후에 지역/맥락 효과만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두 수준 간의 변인을 통제한 효과만을 분석한 것이지 지역/맥락의 조건에 따라 개인의 행위가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분석은 아니다.

최근의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의 사회해체(가난, 주거불안정, 인종적 이질성)가 직접적으로 범죄나 범죄피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 통제는 물론 공식적 통제와 같은 사회통제(약화)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사회해체가 범죄 또는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Bursik and Grasmick, 1993; Hawdon and Ryan, 2009; Rosenfeld, Messner and Baumer, 2001; Sampson, Raudenbush and Earls, 1997; Sampson, Morenoff and Rowley, 2002; 이성식, 2003). 예를 들어, 샘슨과 동료들(Sampson et al., 1997; 2002)은 매개과정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사회적 유대/상호작용'(social ties/interaction)으로 이웃 간 유대의 정도와 상호작용 빈도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집합효율성'(collective efficacy)으로 이웃 간 상호신뢰, 비공식적 통제나 사회적 응집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가 포함된다. 세 번째 유형은 제도적 자원(institutional resources)으로 지역 내 치안유지를 위한 사법기관의 공식통제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집합효율성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문제행위에 대해 주민들 스스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데,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낮은 범죄율을 설명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Lee, 2000; Morenoff and Sampson, 1997; Morenoff,

Sampson and Raudenbush, 2001; Sampson and Raudenbush, 1999).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방법론적으로 다수준 모형(multilevel model)을 통해 개인수준의 변인이 지역수준의 변인에 따라 각 개인의 범죄피해의 가능성에 조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Miethe and Meier, 1994; Wilcox, Land and Miethe, 1994; Wilcox and Land, 1996; 2000; Lauritsen, 2001; Wilcox, Madensen and Tillyer, 2007; Zhang, Messner and Liu, 2007). 윌콕스 등(1994)은 기존의 시애틀 범죄피해조사(Miethe and McDowell, 1993)를 위계선형모형(HLM)을 적용하여 재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범죄피해율(burglary rate)에 대한 지역변인(인구유동 지역, 인종적 이질성, 지역의 무질서)의 영향력이 개인(가구)수준의 변인을 통제했을 때에도 매우 강한 효과를 나타냄을 발견하였다. 후속 연구(Wilcox and Land, 2000)에서 시애틀 이외의 다른 도시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윌콕스와 랜드는 각 도시별로 지역변인의 차이가 가구범죄피해율의 차이를 설명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최근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지역수준의 효과를 단순히 검증하였다는데 있기보다는 지역수준의 변인과 개인수준의 변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과 사회해체이론을 병렬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통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해체이론과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을 통합하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개인수준의 변인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수준의 변인에 의해 '조절효과'(conditional effects)를 보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위계선형모형(HLM)을 적용하여 두 이론에서 주장하는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는 일상활동이론의 개념 가운데 하나인 근접성(proximity)을 개인수준이 아닌 지역수준의 변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근접성은 잠재적 피해대상과 잠재적 범죄자 간의 물리적 거리를 의미한다(Cohen et al. 1981; Meier and Miethe, 1993; Miethe and Meier, 1994). 일반적으로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산다는 것은 범죄피해의 위험 또한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경험적 연구에서도 주장된 바 있다(Singer, 1981). 그러나 근접성을 측정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근접성은 엄

밀히 말해서 피해자가 범죄피해를 당한 장소에서부터 가해자가 사는 집까지의 거리로 측정되어야만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측정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근사변인(proxy variable)을 사용하는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피해자의 거주지(도시/농촌), 사회경제적 수준(평균수입, 실업률, 인종구성비), 동네나 이웃의 지각된 위험수준 등으로 측정되었다(Miethe and Meier, 1990; Tseloni, Wittebrood, Farrell and Pease, 2004). 근접성을 이러한 변인으로 측정한다면 개인수준의 변인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근접성을 지역수준의 변인으로 간주하여 근접성이 개인수준의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도출하여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개인수준에서 주로 초기 연구에서 변인으로 사용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개인범죄피해 간의 관련성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에서 제시하는 매력성, 노출, 보호/감시능력과 피해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특히 매력성, 노출, 보호/감시능력 변인 간의 통계적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수준에서는 우선 사회해체변인(주거불안정성, 비공식적 통제, 공식적 통제, 근접성)이 개인범죄피해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범죄피해에 대한 개인수준 변인의 영향력이 지역수준 변인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위계선형모형(HLM)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이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09년에 수집한 전국범죄피해조사(KCVS) 자료를 이용하였다. 2009년 전국범죄피해조사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일반조사구 중 보통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의 모든 가구 및 14세 이상 가구원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표본선정은 전국의 표본규모를 450개 조사구로 결정한 후에 16개 시도 및 동부, 읍면부를 고려한 25개 층별로 조사모집단 분포의 가구 수에 비례배분을 고려하였고, 조사구당 10가구를 조사하여 총 4,710가구에서 10,671명이 응답을 하였다.

다수준 분석을 적용하기 위해 2수준(level 2) 분석단위는 표본설계 시 사용한 조사구가 아니라 행정구역(시/군/구)을 단위로 하였다. 따라서 2수준 자료는 KCVS에 포함된 시/군/구 평균값으로 되어 있으며, 분석에 사용된 행정구역은 총 174개 지역이다. 2수준의 분석단위를 조사구가 아닌 행정구역으로 선택한 이유는 첫째, 조사구당 표본 수가 10가구라 1수준의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표본수를 늘이기 위함이었고, 둘째, 행정구역이 조사구보다는 2수준 단위로서 실질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즉 행정구역은 조사구에 비해 나름대로 사회적 동질성(social homogeneity)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수준의 분석단위로 설정하였다.

2. 변인의 측정

1) 종속변인

종속변인은 2008년 한 해 동안 개인이 당한 범죄피해이다. 개인범죄피해는 다시 재산범죄피해, 폭력범죄피해, 성폭력범죄피해로 구분을 하였다. 재산범죄피해는 사기를 제외한 절도만 포함되고, 폭력범죄피해는 단순폭행, 심한폭행, 단순협박이 포함되며, 성폭력피해(여성만 포함)는 성폭행, 강제추행, 스토킹을 포함시켰다.[5] 그리고 지역수준의 요인이 개인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에는 사건 발생지가 거주지의 행정구역과 동일한 경우만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5) 남성의 경우에도 성폭력피해자 6명이 있었으나, 일반적인 사례로 보기는 어려워 제외하였다.

2) 독립변인

(1) 개인수준 변인

먼저 개인범죄피해와 관련한 독립변인으로는 '평소 되도록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으려 한다'(매력성), '호루라기, 가스분사기 등 호신용품을 항시 가지고 다닌다'(보호/감시)는 1점부터 5점까지의 척도로 측정을 하였고, '직장이나 학교일로 늦게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노출)의 경우 '전혀 없음'(1점)부터 '거의매일'(8점)까지의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성별(0=남성/1=여성), 연령(10대/20대/30·40대/50대이상), 혼인상태(0=미혼/1=기혼), 취업여부(0=직장있음/1=직장없음(주부제외)), 직업유형(0=기타직종/1=전문·사무·서비스직), 교육수준(무학/초졸/중졸/고졸/대졸/대학원이상), 본인소득수준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2) 지역수준 변인

지역수준의 변인은 이론적인 논의에 따라 근접성(proximity), 비공식적 통제(informal control), 공식적 통제(public control), 주거불안정성(residential instability)으로 나누어, 관련 문항들을 요인분석을 통해 분류하였다. 우선 근접성에는 응답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범죄수준'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 '지역사회의 무질서'를 포함시켰다.[6] 비공식적 통제는 '지역유대/애착', '집합효율성', '이웃 간 친밀성'[7],

6) '내가 살고 있는 동네(지역)의 범죄수준'/ '밤에 혼자 집에 있기가 두렵다', '밤에 혼자서 골목을 다니기가 두렵다', '낯선 사람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두렵다', '나도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동네는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 / '주변에 내버려진 물건이나 쓰레기 더미가 널려 있다', '후미진 곳이나 공터 등이 많다', '냄새나 소음 등으로 쾌적하지 않다',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무리지어 다니는 불량청소년들이 많다', '큰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의 문항으로 1점부터 5점까지의 척도로 측정되었다.

7) '나는 대략 어디까지가 우리 동네인지 알 수 있다', '나는 대체로 누가 동네 아이들인지 알 수 있다', '우리 동네는 이웃끼리 서로 잘 돕고 신뢰 한다', '이웃들은 우리 동네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 한다', '이웃들은 우리 집과 생활정도나 교육수준이 비슷하다' / '동네아이들이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라도 도와줄 것이다', '여학생이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 어떤 방식이라도 도와줄 것이다', '이웃들끼리 범죄예방을 위해 자율방범대를 조직한다면 방범대원으로 지원할 것이다',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가벼운 목례나 눈웃음 정도의 인사를 나누는 사람의 수', '안녕하세요 정도의 가벼운

공식적 통제는 '경찰에 대한 신뢰 및 경찰활동에 대한 만족수준'으로 측정하였고,[8] 주거불안정성은 '거주 기간'과 '이사 횟수'로 측정하였다.[9]

Ⅳ. 분석 결과

1. 개인의 특성과 범죄피해

1)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범죄피해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이 개인재산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과 소득수준만이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혼인상태, 취업여부가 대체로 연령의 효과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타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인재산범죄피해가 높은 10대와 20대[10]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재학중이기 때문에 취업여부에 대해 직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혼인상태의 경우에서도 10대와 20대가 대체로 미혼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혼인상태의 영향력도 사라진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소득수준은 연령에 관계없이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있어서 범죄에 노출 정도를 나타내는 연령과 범죄 대상으로

말로 인사를 나누는 사람의 수', '악수 등 신체적 접촉을 하며 반갑게 안부를 묻는 사람의 수', '30초 이상 서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며 인사하는 사람의 수'의 문항으로 1점부터 5점까지의 척도로 측정되었다.

8) '우리 동네 사람들은 경찰활동에 협조적이며, 경찰을 신뢰한다', '우리 동네 경찰은 순찰활동을 잘 하고 있다', '우리 동네 경찰은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것이다', '우리 동네 경찰은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범인을 반드시 잡아줄 것이다'의 문항으로 1점부터 5점까지의 척도로 측정되었다.

9) '당신은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얼마나 오래 거주하고 있습니까'는 거주기간 개월수를 역순으로 재구성하였고, '최근 5년이내 몇 번이나 이사를 하셨습니까'는 횟수로 측정하였다.

10) 연령대별 평균 개인재산범죄피해 건수는 10대가 0.0630건, 20대가 0.0378건, 3,40대가 0.0307건, 그리고 50대 이상이 0.0145건으로 10대와 20대의 개인재산범죄피해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써의 매력성을 나타내는 소득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재산범죄피해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개인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변인	개인재산범죄피해		개인폭력범죄피해		성범죄피해	
	B	exp(B)	B	exp(B)	B	exp(B)
성별	-.114	.893	.186	1.204		
연령	-.540	.583 ***	-.603	.547 ***	-.443	.642 *
혼인상태	.168	1.183	-.477	.621	-1.170	.311 *
취업여부	-.059	.943	-.025	.976	.528	1.695
직업유형	.183	1.201	-.127	.881	.788	2.200
학력	-.044	.957	-.184	.832	.569	1.766 **
소득수준	.192	1.211 *	-.198	.821	-.677	.508 **
-2Loglikelihood	2703.586		874.215		427.595	
Cox & Snell R Square	.007		.005		.012	

*p<0.05 **p<0.01 ***p<0.001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을 살펴보면, 연령만이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연령과 개인폭력범죄피해는 정적 관계로 나타나고 있어 연령이 낮아질수록 개인폭력범죄피해는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혼인상태, 취업여부, 그리고 직업유형이 연령의 효과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개인폭력범죄피해도 개인재산범죄피해와 유사하게 10대와 20대에 집중되어 나타나는데[11], 혼인상태가 기혼이거나, 취업여부가 직업이 있는 경우는 대체로 30대 이상인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혼인상태나 취업여부는 연령효과에 의해 영향력이 상쇄되어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범죄를 유발시키는 매력성으로 볼 수 있는

11) 연령대별 평균 개인폭력범죄피해 건수는 10대가 0.0229건, 20대가 0.130건, 3,40대가 0.0046건, 그리고 50대 이상이 0.0040건으로 10대와 20대의 개인폭력범죄피해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과 소득수준은 개인재산범죄피해와 달리 여전히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피해 유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성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연령, 혼인상태, 학력, 그리고 소득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성범죄피해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성범죄피해는 개인재산범죄피해와 개인폭력범죄피해와 유사하게 주로 10대와 20대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12]. 그러나 성범죄피해는 개인재산범죄피해와 개인폭력범죄피해와는 다르게 연령을 통제하여도 혼인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같은 연령대라 하더라도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의 성범죄피해 가능성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력도 개인재산범죄피해와 개인폭력범죄피해의 경우에는 연령의 영향으로 인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았으나, 성범죄피해에서는 같은 연령대에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성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성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에 주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2) 범죄피해요인들과 범죄피해와의 관련성

범죄피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범죄대상의 매력성, 보호, 노출을 들 수 있다. 앞서 논의한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은 범죄피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한 것이라 간주하였다. 예를 들면, 연령은 젊은 세대일수록 집밖에서의 활동이 활발할 것이고, 이는 범죄에 더욱 노출될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직접적인 범죄피해요인을 통해 범죄피해를 설명하고자 한다.

범죄피해는 매력성, 보호, 그리고 노출과 같은 요인들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

---

12) 연령대별 평균 성범죄피해 건수는 10대가 0.0145건, 20대가 0.0280건, 3,40대가 0.0061건, 그리고 50대 이상이 0.0005건으로 10대와 20대의 성범죄피해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이들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범죄피해를 설명할 수 있다. 즉 매력성이 높으면서 보호가 낮은 사람들이거나 보호가 낮으면서 노출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단지 매력성만 높거나, 노출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범죄피해가 더욱 높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요인들의 개별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이들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개인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피해요인과 이들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우선 개인재산범죄피해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금소지 성향과 늦은 귀가 성향이 개인재산범죄피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현금소지 성향이 낮을수록, 늦은 귀가 성향이 높을수록 개인재산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현금소지 성향이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기보다는 과거의 개인재산범죄피해로 인해 현재의 현금소지 성향이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요인들 간의 모든 상호작용은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매력성, 보호, 그리고 노출과 같은 범죄피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범죄피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개인재산범죄피해에 그리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피해요인과 이들 요인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늦은 귀가 성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늦은 귀가 성향이 높을수록 폭력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재산범죄피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범죄피해요인들의 상호작용은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피해요인으로는 범죄에 노출이라 할 수 있는 늦은 귀가 성향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범죄피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개인폭력범죄피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개인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범죄피해요인 간의 상호작용

변인	개인재산범죄피해		개인폭력범죄피해		성범죄피해	
	B	exp(B)	B	exp(B)	B	exp(B)
현금소지성향(a)	-.344	.709 ***	-.045	.956	-.458	.633 *
호신도구소지성향(b)	.091	1.095	-.021	.980	.224	1.251
늦은 귀가 성향(c)	.115	1.122 ***	.167	1.182 **	.280	1.323 ***
a*b	-.052	.950	.152	1.165	-.170	.844
a*c	.039	1.039	-.095	.910	.003	1.003
b*c	-.055	.947	.003	1.003	-.243	.785
a*b*c	-.032	.969	-.161	.851	-.021	.979
-2Loglikelihood	2723.960		907.004		465.194	
Cox & Snell R Square	.006		.001		.005	

*p<0.05 **p<0.01 ***p<0.001

성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피해요인과 이들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현금소지성향과 늦은 귀가 성향이 성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현금소지 성향이 낮을수록, 늦은 귀가 성향이 높을수록 성범죄피해의 가능성을 증가하였다. 현금소지 성향의 경우에는 성범죄가 주로 10대와 20대에서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의 효과와 맞물려서 나타난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10대와 20대의 경우에는 현금소지 성향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현금소지 성향과 성범죄피해 가능성 간에는 부적인 관계로 나타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피해유형들의 모든 상호작용은 성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매력성, 보호, 그리고 노출과 같은 범죄피해요인들 중에서 매력성과 노출의 주효과가 범죄피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출과 같이 늦은 귀가 성향은 모든 범죄피해유형들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범죄피해를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범죄피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모든 범죄피해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사회해체와 범죄피해

사회해체요인이 개인재산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사회해체요인들 중에서 주거 불안정성, 근접성, 그리고 공식적 통제가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거 불안정성과 근접성은 정적인 영향을 개인재산범죄피해에 미치고 있다. 즉 주거 불안정성이 클수록, 근접성이 클수록 개인재산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빈번한 가구의 이사나 현 거주지에 오래동안 살지 않음으로 인해 이웃주민들과 유대의 정도가 낮은 지역에서 개인재산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근접성과 같이 현거주지에서의 범죄수준이나 범죄의 두려움, 혹은 무질서의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일수록 개인재산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 통제는 개인재산범죄피해와 부적 관계로 나타나고 있어 경찰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개인재산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해체요인을 살펴보면,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근접성만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자신의 현거주지가 범죄수준이나 범죄의 두려움, 혹은 무질서의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개인폭력범죄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재산범죄피해와 비교하면, 주거 불안정이나 공식적 통제, 그리고 근접성이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비해 개인폭력범죄피해의 경우에는 근접성만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폭력범죄피해는 범죄수준이나 범죄의 두려움과 같이 직접적인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한 경우에 개인폭력범죄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해체요인을 살펴보면, 성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해체요인들은 근접성과 공식적 통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근접성은 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근접성이 높을수록 성범죄피해가 증가하였고, 공식적 통제는 부적 영향을 주고 있어 공식적 통제가 낮을수록 성범죄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지역의 환경이 범죄수준이 높고, 이로 인해 범죄에 대

한 두려움이 높다고 인지한 경우에 성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 자신의 거주지에서 경찰활동이 활발하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성범죄피해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어 성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경찰활동과 같은 공식적 통제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표 3〉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해체 요인

변인	개인재산범죄피해		개인폭력범죄피해		성범죄피해	
	B	exp(B)	B	exp(B)	B	exp(B)
주거 불안정성	.107	1.113 **	-.077	.926	.032	1.032
비공식적 통제	.050	1.051	-.102	.903	-.125	.882
근접성	.156	1.169 ***	.279	1.321 ***	.312	1.366 ***
공식적 통제	-.095	.090 ***	.053	1.054	-.135	.874 *
-2Loglikelihood	2350.402		766.378		370.182	
Cox & Snell R Square	.006		.002		.006	

*p<0.05 **p<0.01 ***p<0.001

3. 사회해체 요인과 개인적 요인의 다수준 분석

1) 개인재산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사회해체요인과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이 개인재산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우선 사회해체요인이 개인재산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주거 불안정성, 비공식적 통제, 근접성, 공식적 통제가 모두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거 불안정성, 비공식적 통제, 그리고 근접성은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지역사회에서의 주거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비공식적 통제가 높을수록, 그리고 근접성이 높을수록 범죄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 주거 불안정성이 높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이동이 빈번함에 따라 주민들 간의 유대가 약화됨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한 상호감독과 같은 요인들이 낮아짐에 따라 범죄피해가 증가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근접성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범죄자의 출현가능성이 높다고 인지된 지역에서는 개인재산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비공식적 통제는 지역주민들 간의 관계가 돈독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에 참여 의지로 범죄피해의 가능성을 줄이는 요인으로 가정했으나 오히려 범죄피해와 정적인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해체요인과 성별 간의 상호작용이 개인재산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성별은 사회해체요인과의 상호작용이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사회해체요인과는 상관없이 개인적 수준에서 성별이 여성보다는 남성인 경우에 개인재산범죄피해가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혼인상태의 경우에는 개인적 수준에서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주거 불안정성, 비공식적 통제, 그리고 근접성과의 상호작용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혼인상태와 이들 사회해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모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주거 불안정성이 높은 지역에서 미혼인 경우에 범죄피해를 더욱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공식적 통제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비공식적 통제가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미혼인 경우에는 기혼자에 비해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혼인상태와 근접성의 상호작용은 근접성이 높은 지역에서 미혼인 경우 범죄피해를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취업여부는 개인적 수준과 사회해체요인들과의 상호작용 모두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이러한 점은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있어서 취업여부가 범죄의 노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3) 사회해체요인과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거 불안정성과 혼인상태 간의 상호작용이 범죄피해에 부적 영향을 준다면, 주거 불안정성이 높은 지역에서 기혼자일수록 범죄피해가 적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동시에 주거 불안정성이 낮은 지역에서 기혼자일수록 범죄피해가 더 많이 일어났다는 해석과 주거 불안정성이 높은 지역에서 미혼자일수록 범죄피해가 더 많이 일어났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다수준분석 프로그램인 HLM에서 제공하는 그래프를 통해 가장 타당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14) <표 1>에서의 결과와 같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하더라도, 다수준분석에서는 지역수준변인들을 통제한 후에 분석을 하기 때문에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

〈표 4〉 개인재산범죄피해에 대한 다수준 분석

변인	Coefficient	T값	변인	Coefficient	T값
Intercept			연령	-.540	-.209 ***
			상호작용		
• 주거 불안정성	.374	3.374 **	• 주거 불안정성	.042	.384
• 비공식적 통제	.266	2.793 **	• 비공식적 통제	-.041	-.393
• 근접성	.389	4.476 ***	• 근접성	-.067	-1.064
• 공식적 통제	-.266	-3.185 **	• 공식적 통제	-.066	-.906
성별	-.297	-2.835 **	소득수준	.259	3.374 **
상호작용			상호작용		
• 주거 불안정성	.048	.279	• 주거 불안정성	-.178	-1.266
• 비공식적 통제	.234	1.608	• 비공식적 통제	-.092	-.806
• 근접성	.169	1.544	• 근접성	-.325	-4.014 ***
• 공식적 통제	-.119	-1.028	• 공식적 통제	-.029	-.287
혼인상태	.114	.845	늦은 귀가 성향	.041	2.104 *
상호작용			상호작용		
• 주거 불안정성	-.617	-3.036 **	• 주거 불안정성	-.034	-1.069
• 비공식적 통제	-.650	-3.973 ***	• 비공식적 통제	-.076	-2.347 *
• 근접성	-.499	-4.274 ***	• 근접성	-.135	-7.424 ***
• 공식적 통제	-.173	-1.184	• 공식적 통제	.033	1.430
취업여부	-.235	-1.725	호신도구 소지 성향	.014	.269
상호작용			상호작용		
• 주거 불안정성	-.153	-737	• 주거 불안정성	-.328	-4.438 ***
• 비공식적 통제	-.299	-1.831	• 비공식적 통제	-.273	-4.186 ***
• 근접성	-.141	-1.301	• 근접성	-.052	-.761
• 공식적 통제	.086	.653	• 공식적 통제	.066	1.121
학력	-.126	-2.748 **	현금소지 성향	-.333	-6.287 ***
상호작용			상호작용		
• 주거 불안정성	-.034	-.544	• 주거 불안정성	.118	1.908
• 비공식적 통제	.017	.272	• 비공식적 통제	.074	1.318
• 근접성	.099	2.231 *	• 근접성	.041	1.026
• 공식적 통제	.128	2.576 *	• 공식적 통제	-.002	-.028

*p<0.05 **p<0.01 ***p<0.001

학력은 개인적 수준에서 개인재산범죄피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력이 높을수록 범죄피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사

회해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학력과 근접성, 그리고 공식적 통제간의 상호작용이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상호작용은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근접성이 높은 지역에 비해 근접성이 낮은 지역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개인재산범죄피해가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학력과 공식적 통제의 상호작용에서도 공식적 통제가 낮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학력이 높을수록 개인재산범죄피해가 더욱 감소하였다.

연령은 개인적 수준에서 개인재산범죄피해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재산범죄피해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렇지만 연령은 사회해체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대해서는 개인적 수준에서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재산범죄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해체요인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근접성과의 상호작용이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접성이 낮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개인재산범죄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늦은 귀가 성향은 개인적 수준에서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늦은 귀가 성향이 높을수록 개인재산범죄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늦은 귀가 성향과 사회해제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늦은 귀가 성향과 비공식적 통제, 그리고 근접성과의 상호작용이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공식적 통제가 낮은 지역에서 늦은 귀가 성향이 높을수록 범죄피해를 더욱 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근접성이 낮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늦은 귀가 성향이 높을수록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신도구 소지 성향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적 수준에서 개인재산범죄피해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신도구 소지 성향과 사회해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주거 불안정성과 비공식적 통제와의 상호작용이 개인재산범죄피해에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불안정성이 높은 곳에서 호신도구 소지 성향이 높을수록 개인재산범죄피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비공식적 통제가 높은 지역에서 호신도구 소지

성향이 높을수록 범죄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현금소지 성향에 대해서는 개인적 수준에서만 개인재산범죄피해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금소지 성향이 낮을수록 범죄피해를 더욱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앞의 <표 5>에서도 설명하였듯이 과거의 범죄피해로 인해 현재의 현금소지 성향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2) 개인폭력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지역수준에서의 사회해체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개인폭력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수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우선 사회해체요인이 개인폭력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주거 불안정성, 비공식적 통제, 그리고 공식적 통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주거 불안정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비공식적 통제가 높은 지역일수록, 그리고 공식적 통제가 낮은 지역일수록 개인폭력범죄피해가 증가하였다. 이 결과에서 비공식적 통제는 개인재산범죄피해에서와 같이 범죄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가정하였으나 오히려 범죄피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별은 개인적 수준에서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성일수록 개인폭력범죄피해를 더욱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과 사회해체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주거 불안정성과 근접성과의 상호작용이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주거 불안정성 간의 상호작용은 개인폭력범죄피해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거 불안정성이 높아질수록 남성의 개인폭력범죄피해가 여성에 비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과 근접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근접성이 높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의 개인폭력범죄피해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별에 따라 주거 불안정성과 근접성과 같은 사회해체요인들이 개인폭력범죄피해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개인적 수준에서 개인폭력범죄피해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혼자들이 기혼자들에 비해 개인폭력범죄피해가 더욱 많다는 것이다. 혼인상태와 사회해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혼인상태와 주거 불안

정성, 그리고 근접성과의 상호작용이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혼인상태와 주거 불안정성 간의 상호작용은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거 불안정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기혼자들의 개인폭력범죄피해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개인적 수준에서 혼인상태가 개인폭력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과는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와 근접성 간의 상호작용은 부적 관계로 나타나고 있어 근접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기혼자들에 비해 미혼자들의 개인폭력범죄피해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개인폭력범죄피해에 대한 다수준 분석

변인	Coefficient	T값	변인	Coefficient	T값
Intercept			연령	-.434	-7.355 ***
			상호작용		
• 주거 불안정성	.424	4.434 ***	• 주거 불안정성	.233	2.606 *
• 비공식적 통제	.467	4.813 ***	• 비공식적 통제	.194	2.187 *
• 근접성	.104	1.602	• 근접성	-.096	-1.978 *
• 공식적 통제	-.282	-2.758 **	• 공식적 통제	-.344	-4.625 ***
성별	.295	3.060 **	소득수준	-.344	-3.360 **
상호작용			상호작용		
• 주거 불안정성	-.533	-3.267 **	• 주거 불안정성	-.248	-1.783
• 비공식적 통제	-.179	-1.331	• 비공식적 통제	.063	.419
• 근접성	.436	3.968 ***	• 근접성	.342	5.174 ***
• 공식적 통제	-.182	-1.798	• 공식적 통제	-.135	-1.233
혼인상태	-.307	-2.128 *	늦은 귀가 성향	.128	4.999 ***
상호작용			상호작용		
• 주거 불안정성	.379	2.172 *	• 주거 불안정성	-.128	-3.666 **
• 비공식적 통제	-.172	-.778	• 비공식적 통제	-.120	-3.533 **
• 근접성	-.496	-4.564 ***	• 근접성	-.057	-2.685 **
• 공식적 통제	.033	.205	• 공식적 통제	-.071	-2.830 **
취업여부	.030	.194	호신도구 소지 성향	.434	6.506 ***
상호작용			상호작용		
• 주거 불안정성	1.268	5.579 ***	• 주거 불안정성	.016	.216
• 비공식적 통제	.222	1.368	• 비공식적 통제	.102	1.210
• 근접성	-.266	-1.901	• 근접성	.176	2.002 *
• 공식적 통제	-.275	-2.122 *	• 공식적 통제	.219	3.383 **

변인	Coefficient	T값	변인	Coefficient	T값
학력	-.158	-3.063 **	현금소지 성향	.071	1.399
상호작용			상호작용		
• 주거 불안정성	-.069	-1.065	• 주거 불안정성	-.067	-.822
• 비공식적 통제	.050	.784	• 비공식적 통제	-.157	-2.187 *
• 근접성	.154	3.834 ***	• 근접성	-.066	-1.093
• 공식적 통제	-.022	-.586	• 공식적 통제	.104	1.670

*p<0.05 **p<0.01 ***p<0.001

취업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개인적 수준에서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취업여부와 사회해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취업여부와 주거 불안정성, 그리고 공식적 통제와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취업여부와 주거 불안정성의 상호작용은 개인폭력범죄피해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거 불안정성이 높아질수록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개인폭력범죄피해를 더욱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취업여부와 공식적 통제 간의 상호작용은 개인폭력범죄피해에 대해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공식적 통제가 높아질수록 직업이 없는 사람들의 개인폭력범죄피해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더욱 감소하였다.

학력에 대하여 개인적 수준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개인폭력범죄피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사회해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학력과 근접성 간의 상호작용이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근접성이 낮은 지역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개인폭력범죄피해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령은 개인적 수준에서 개인폭력범죄피해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폭력범죄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과 사회해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연령과 주거 불안정성, 비공식적 통제, 근접성, 그리고 공식적 통제와의 상호작용이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연령과 주거 불안정성, 그리고 비공식적 통제 간의 상호작용은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거 불안정성이나 비공식적 통제가 높은 지역에서는 연령이 높은 사람들도 개인폭력범죄피해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근접성, 공식적 통제의 상호작용은 개인폭력범죄피해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접성이나 공식적 통제가 높은 지역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개인폭력범죄피해가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수준은 개인적 수준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개인폭력범죄피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수준과 사회해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근접성만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즉 근접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개인폭력범죄피해가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늦은 귀가 성향은 개인적 수준에서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늦은 귀가 성향이 높을수록 개인폭력범죄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늦은 귀가 성향과 사회해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주거 불안정성, 비공식적 통제, 근접성, 그리고 공식적 통제와의 상호작용이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늦은 귀가 성향과 주거 불안정성 간의 상호작용이 개인폭력범죄피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거 불안정성이 낮은 지역에서 늦은 귀가 성향이 높을수록 개인폭력범죄피해가 더욱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늦은 귀가 성향과 비공식적 통제 간의 상호작용은 비공식적 통제가 낮은 지역에서 늦은 귀가 성향이 높아질수록 개인폭력범죄피해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늦은 귀가 성향과 근접성 간의 상호작용은 근접성이 낮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늦은 귀가 성향이 높을수록 개인폭력범죄피해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 통제와 늦은 귀가 성향의 상호작용은 공식적 통제가 낮은 지역에서 늦은 귀가 성향이 높을수록 개인폭력범죄피해는 더욱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호신도구 소지 성향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적 수준에서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호신도구 소지 성향이 높을수록 개인폭력범죄피해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호신도구 소지 성향이 높을수록 자신이 범죄에 취약한 상황을 인지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호신도구 소지 성향과 사회해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우선 호신도구 소지 성향과 근접성 간의 상호작용을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근접성이 높은 지역에서 호신도구 소지 경향이 높을수록 개인폭력범죄피해가 더욱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호신도구

소지 성향과 공식적 통제 간의 상호작용은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식적 통제가 낮은 지역에서 호신도구 소지 성향이 높을수록 개인폭력범죄피해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금소지 성향은 개인적 수준에서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현금소지 성향과 사회해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비공식적 통제와의 상호작용만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낮은 지역에서는 현금소지 성향이 높을수록 개인폭력범죄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성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수준에서의 사회해체요인과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이 성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사회해체요인이 성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근접성과 공식적 통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접성은 성범죄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근접성이 높을수록 성범죄피해는 높아지고 있다. 반면 공식적 통제는 성범죄피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개인적 요인 중에서 우선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개인적 수준에서 혼인상태는 성범죄피해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혼일수록 성범죄피해가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혼인상태와 사회해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공식적 통제와의 상호작용이 정적으로 성범죄피해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공식적 통제가 낮은 지역에서 미혼의 성범죄피해가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여부는 개인적 수준에서 성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취업여부와 사회해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취업여부와 주거 불안정성, 그리고 근접성과의 상호작용이 성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취업여부와 주거 불안정성 간의 상호작용은 성범죄피해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거 불안정성이 높은 지역에서 직업이 없는 여성의 경우에 성범죄피해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취업여부와 근접성 간의 상호작용은 근접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의 성범죄피해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표 6〉 성범죄피해에 대한 다수준 분석

변인	Coefficient	T값		변인	Coefficient	T값	
Intercept				소득수준	-1.308	-9.996	***
				상호작용			
• 주거 불안정성	.190	.792		• 주거 불안정성	-.163	-.677	
• 비공식적 통제	-.194	-.967		• 비공식적 통제	-.542	-2.640	**
• 근접성	.481	3.316	**	• 근접성	.248	2.128	*
• 공식적 통제	-.301	-2.100	*	• 공식적 통제	-.725	-5.764	**
혼인상태	-1.036	-5.536	***	늦은 귀가 성향	-.108	-2.861	**
상호작용				상호작용			
• 주거 불안정성	-.425	-1.614		• 주거 불안정성	-.131	-1.865	
• 비공식적 통제	-.211	-.838		• 비공식적 통제	-.056	-1.114	
• 근접성	.333	1.966		• 근접성	.191	3.930	***
• 공식적 통제	.699	3.972	***	• 공식적 통제	-.022	-.502	
취업여부	-.360	-1.287		호신도구 소지 성향	.439	5.535	***
상호작용				상호작용			
• 주거 불안정성	2.173	5.469		• 주거 불안정성	-.048	-.325	
• 비공식적 통제	.136	.413	***	• 비공식적 통제	-.310	-2.306	*
• 근접성	-.757	-3.854	***	• 근접성	-.156	-1.246	
• 공식적 통제	.248	.920		• 공식적 통제	.367	3.698	***
학력	.867	8.192	***	현금소지 성향	.194	1.855	
상호작용				상호작용			
• 주거 불안정성	.455	2.501	*	• 주거 불안정성	.275	1.614	
• 비공식적 통제	.277	1.776		• 비공식적 통제	-.048	-.361	
• 근접성	-.370	-4.200	***	• 근접성	-.229	-2.375	*
• 공식적 통제	-.021	-.246		• 공식적 통제	-.218	-2.898	**
연령	-.604	-5.578	***				
상호작용							
• 주거 불안정성	.538	3.319	**				
• 비공식적 통제	.134	.904					
• 근접성	-.339	-2.772	**				
• 공식적 통제	-.400	-2.707	**				

*p<0.05 **p<0.01 ***p<0.001

학력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성범죄피해에 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성범죄피해가 더욱 높다는 것이다. 학력과 사회해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주거 불안정성과 근접성과의 상호작용이 성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력과 주거 불안정성 간의 상호작용은 주거 불안정성이 높은 지역에서 학력이 높은 여성일수록 성범죄피해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과 근접성 간의 상호작용은 근접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학력이 높은 여성일수록 성범죄피해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개인적 수준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성범죄피해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은 사회해체요인들 중에서 주거 불안정성, 근접성, 그리고 공식적 통제와의 상호작용이 성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령과 주거 불안정성 간의 상호작용은 성범죄피해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거 불안정성이 낮은 지역에서 연령이 높은 여성일수록 성범죄피해가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령과 근접성 간의 상호작용은 근접성이 높은 지역이라도 연령이 높을수록 성범죄피해가 근접성이 낮은 지역에 비해 더욱 감소하였다. 연령과 공식적 통제 간의 상호작용은 공식적 통제가 높은 지역에서는 공식적 통제가 낮은 지역에 비해 연령이 높을수록 성범죄피해가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개인적 수준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성범죄피해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과 비공식적 통제 간의 상호작용은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높은 지역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성범죄피해가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득수준과 근접성 간의 상호작용은 근접성이 높은 지역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성범죄피해가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소득수준과 공식적 통제 간의 상호작용은 공식적 통제가 높은 지역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성범죄피해는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늦은 귀가 성향은 개인적 수준에서 성범죄피해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늦은 귀가 성향이 높을수록 성범죄피해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늦은 귀가 성향은 사회해체요인들 중에서 근접성과의 상호작용만 성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접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늦은 귀가 성향이 높다 하더라도 성범죄피해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근접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늦은 귀가 성향이 높을수록 성범죄피해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범죄피해가 늦은 귀가 성향만으로 설명되기 보다는 근접성과 같은 지역적 영향이 더욱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호신도구 소지 성향은 개인적 수준에서 성범죄피해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호신도구 소지 성향이 높을수록 성범죄피해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호신도구를 소지하는 것이 오히려 범죄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인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호신도구 소지 성향과 사회해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사회해체요인들 중에서 비공식적 통제와 공식적 통제와의 상호작용이 성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호신도구 소지 성향과 비공식적 통제 간의 상호작용은 성범죄피해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비공식적 통제가 높은 지역에서 호신도구 소지 성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성범죄피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호신도구 소지 성향과 공식적 통제 간의 상호작용은 성범죄피해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식적 통제가 낮은 지역에서는 호신도구 소지 성향이 높을수록 성범죄피해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현금소지 성향은 개인적 수준에서 성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현금소지 성향은 사회해체요인들 중에서 근접성과 공식적 통제와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금소지 성향과 근접성 간의 상호작용은 성범죄피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근접성이 높은 지역에서 현금소지 성향이 낮을수록 성범죄피해가 높아지고 있다. 현금소지 성향과 공식적 통제 간의 상호작용은 공식적 통제가 낮은 지역에서 현금소지 성향이 높을수록 성범죄피해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지금까지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범죄피해와 가장 두드러진 효과를 보이는 변인은 연령으로 나타났다. 젊은 사람일수록 개인폭력범죄, 재산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를 많이 당하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재산범죄피해를 경험할 확률은 높아지나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할 확률은 낮아진다. 혼인상태(미혼)는 성폭력범죄와 연관이 있으나 아마도 연령효과와 노출효과의 결과

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상활동이론과 범죄피해와의 연관을 살펴보기 위해 현금소지(매력성), 호신도구소지(보호), 늦은 귀가(노출)과 범죄피해와의 상관을 보면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범죄 피해는 주로 늦은 귀가와 연관이 있으며 호신도구등 보호효과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소지 성향 즉 범죄피해자의 매력성을 보여주는 요인은 예상과 달리 소지하는 정도가 낮은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마도 연령 효과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즉 늦은 귀가가 많은 젊은 사람들은 현금을 많이 소지하지 않고 다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3요인의 상호작용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마이어와 미이테의 (Meier and Miethe, 1993)의 예상과는 달리 이상의 세가지 요인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부연하면 비록 매력이 없고 보호성이 떨어지더라도 노출 즉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는 젊은 사람은 다양한 범죄피해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해석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범죄 피해를 줄이려면 늦은 시간에 밖에 나다니지 않아야한다고 해석하면 범죄피해을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게 된다. 물론 범죄 예방에서 개인이 해야할 부분이 없지 않으나 국가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늦은 시간이라도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사회해체와 관련된 4개의 하위변인과 다양한 범죄피해와의 연관성을 로짓분석과 다수준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4개의 변인 중 범죄자의 출현가능성 및 지역사회 무질서 정도를 보여주는 ‘근접성’이 범죄피해와 연관성이 가장 크며, 두 번째로는 ‘공식적 통제’로 보인다. 즉 근접성이 높은 지역에서 범죄피해 가능성이 가장 큰 반면 공식적인 통게가 잘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낮아진다. ‘주거불안정성’ 즉 이사를 자주 다니거나 현 주소에서 거주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역이 재산범죄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으나 폭력범죄나 성폭력범죄와는 큰 연관이 없다.

다섯째, 사회해체 관련변인은 지역사회의 특성을 보여주는 2수준 변인이다. 지역사회의 특성과 개인의 특성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특성과 개인 특성 사이에 다양한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개인재산범죄와 가구범죄 피해에 비해 개인폭력범죄와 성폭력범죄 등 폭력성 범죄와 상호작용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폭력범죄에서 근접성은 거의 모든 개인적 특성과 상호작용을 하는 반면 직접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연하면 폭력범죄에 대해 근접성은 조건으로서 작용하는 영향이 더 크다는 말이다. 즉 지역사회가 무질서하며 주민들이 범죄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역 그 자체가 폭력성 범죄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특성이 다양한 개인적 특성, 예컨대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소득수준 등의 요소와 상호작용을 하여 폭력성 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공식적통제는 재산범죄와는 상호작용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반면 폭력성 범죄와는 연령, 늦은 귀가성향 등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즉 젊은 사람과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은 공식통제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폭력범죄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개인수준에서는 '연령'과 '늦은 귀가'가 범죄피해와 연관이 크며 지역사회 수준에서 영향이 가장 큰 요인은 '근접성'이며 그 다음으로 '공식적 통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는 젊고,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이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사회가 무질서하여 그 결과 주민들이 범죄를 두려워하는 지역에서 범죄피해 특히 폭력성 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며 경찰 활동 등 공식적 통제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범죄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낮은 것처럼 보인다. 또한 이러한 개인적인 특성과 지역사회 특성의 상호작용 효과도 상당히 큰 것으로 밝혀졌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과 더불어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범죄예방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늦게까지 밖에서 보내는 젊은 사람들은 범죄피해를 줄이려면 일찍 귀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근접성이 매우 높은 지역인 우범지역이나 유흥가를 밤 늦게 다니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지역사회 수준 변인의 효과 중 근접성과 공식적 통제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볼 때 국가적인 차원의 범죄 예방 노력이 개인적인 수준의 조심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이성식 (1998). "거주지역의 특성과 개인의 범죄피해: 거시 및 미시수준의 연계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6권:113-143.

이성식 (2003). "지역무질서, 지역유대와 범죄피해의 관계", 피해자학연구 제11권 제1호:87-106.

Amir, Menachem (1967). "Victim precipitated Forcible Rape." Journal of Criminal Law, Criminology, and Police Science 58:493-502.

Bursik, Robert J. Jr. (1984). "Urban dynamics and ecological studies of delinquency." Social Forces 63:393-413.

Bursik, Robert J. Jr. (1988). "Social disorganization and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y: Problems and Prospects." Criminology 26:519-551.

Bursik, Robert J. Jr., and Harold G. Grasmick (1993). Neighborhoods and Crime: The dimensions of effective community control. Maryland: Lexington Books.

Bursik, Robert J. Jr., and Jim Webb (1982). "Community change and patterns of delinqu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8:24-42.

Cohen, Lawrence E., and Marcus Felson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588-608.

Cohen, Lawrence E., James R. Kluegel, and Kenneth C. Land (1981). "Social inequality and predatory criminal victimization: An exposition and test of a formal the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505-524.

Felson, Marcus, and Lawrence E. Cohen (1980). "Human ecology and crime: A routine activity approach." Human Ecology 8(4):389-406.

Garofalo, James (1987). "Reassessing the lifestyle model of criminal victimization." Pp. 23-42 in Positive Criminology, edited by Michael R. Gottfredson and

Travis Hirshi. Beverly Hills, CA: Sage.

Gottfredson, Michael R., and Michael J. Hindelang (1981). "Sociological aspects of criminal victimiz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7:107-128.

Hawdon, James and John Ryan (2009). "Social capital, social control, and changes in victimization rates." Crime and Delinquency 55(4): 526-549.

Hindelang, Micheal J., Micheal R. Gottfredson, and James Garofalo (1978). Victims of Personal Crime. Cambridge, Mass: Ballinger.

Kornhauser, Ruth R. (1978). Social Sources of Delinquen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uritsen, Janet L. (2001). "The social ecology of violent victimization: Individual and contextual effects in the NCVS."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7(1):3-32.

Lee, Mattew R. (2000). "Community cohesion and violent predatory victimization: A theoretical extension and cross-national test of opportunity theory." Social Forces 79(2):683-688.

Liska, Allen E., and Steven F. Messner (1999). Perspectives on Crime and Deviance. 3rd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Meier, Robert F., and Terance D. Miethe (1993). "Understanding theories of criminal victimization." Pp. 459-199 in Crime and Justice 15, edited by Albert J. Reiss Jr., and Michael Ton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iethe, Terance D., and David McDowall (1993). "Contextual effects in models of cirminal victimization." Social Forces 71(3):741-759.

Miethe, Terance D., and Robert F. Meier (1990). "Criminal opportunity and victimization rates: A structural-choice theory of criminal victimizat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7:243-266.

Miethe, Terance D., and Robert F. Meier (1994). Crime and Its Social Context: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Offenders, Victims, and Situations.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Miethe, Terance. D., Mark C. Stafford, and J. Scott Long (1987). "Social differentiation in criminal victimization: A test of routine activities/lifestyle theo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184-194.

Morenoff, Jeffrey D., and Robert J. Sampson (1997). "Violent crime and the spatial dynamics of neighborhood transition: Chicago, 1970-1990." Social Forces 76:31-65.

Morenoff, Jeffrey D., Robert J. Sampson, and Stephen W. Raudenbush (2001). "Neighborhood inequality, collective efficacy, and the spatial dynamics of urban violence." Criminology 39(3):517-559.

Robinson, W.S. (1950). "Ecological correlation and the behavior of individual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5:351-357.

Rock, Paul (2000). "Theoretical perspectives on victimization." Pp. 37-61 in Handbook of Victims and Victimology, edited by S. Walklate. Willan Publishing.

Rosenfeld, Richard, Steven F. Messner, and Eric P. Baumer (2001). "Social capital and homicide." Social Forces 80(1):283-309.

Sampson, Robert. J. (1983). "Structural density and criminal victimization." Criminology 21:276-293.

Sampson, Robert. J. (1985). "Neighborhood and crime: The structural determinants of personal victimizat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2:7-40.

Sampson, Robert. J. (1987). "Communities and crime." Pp. 91-114 in Positive Criminology, edited by Michael R. Gottfredson and Travis Hirshi. Beverly Hills, CA: Sage.

Sampson, Robert. J. (1991). "Linking the micro- and macrolevel dimensions of community social organization." Social Forces 70:43-64.

Sampson, Robert. J., and W. Byron Groves (1989). "Community structure and

crime: Testing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774-802.

Sampson. Robert J., and John D. Wooldledge (1987). "Linking the micro-level and mcaro-level dimensions of lifestyle-routine activity and opportunity models of predatory victimization."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3(4):371-393.

Sampson. Robert J., and Stephen W. Raudenbush (1999). "Systemic social observation of public spaces: A new look at disorder in urban neighborhood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603-651.

Sampson. Robert J., Jeffrey D. Morenoff, and Thomas Gannon-Rowley (2002). "Assessing 'Neighborhood Effects': Social processes and New Directions in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28:443-478.

Sampson. Robert J., Stephen W. Raudenbush, and Felton Earls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918-924.

Shaw, Clifford R., and Henry D. McKay (1931). Social Factors in Juvenile Delinquency. National Commission on Law Observation and Enforcement, No. 13, Report on the Causes of Crime, Volumn Ⅱ.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Shaw, Clifford R., and Henry D. McKay (1942). Je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inger, Simon (1981). "Homogeneous victim-offender populations: A review and some research implication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2(2):779-788.

Smith, Douglas A., and G. Roger Jarjoura (1989). "Household characteristics, neighborhood compositions, and victimization risk." Social Forces 68:621-640.

Tseloni, Andromachi, Karin Wittebrood, Graham Farrell, and Ken Pease (2004).

"Burglary victimization in England and Wales, The United States and Netherlands: A cross-national comparative test of routine activities and lifestyle theorie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4:66-91.

Wilcox Rountree, Pamela, and Kenneth C. Land (1996). "Burglary victimization, perceptions of crime risk, and routine activites: A multilevel analysis across Seattle neighborhoods and census tract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3:147-180.

Wilcox Rountree, Pamela, and Kenneth C. Land (2000). "Generalizability of multilevel models of burglary victimization: A cross-city comparison." Social Science Research 29:284-305.

Wilcox Rountree, Pamela, Kenneth C. Land, and Terance D. Miethe (1994). "Macro-Micro Integration in the study of victimization: Hierarchical logistic model analysis across Seattle neighborhoods." Criminology 32(3):387-414.

Wilcox Rountree, Pamela, Tamara D. Madensen, and Marie Skubak Tillyer (2007). "Guardianship in context: Implications for burglary victimization risk and prevention." Criminology 45(4):771-801.

Wolfgang, Martin, E. (1957). "Victim precipitated Criminal Homicide." Journal of Criminal Law, Criminology and Police Science 48(1):1-14.

Zhang, Lening, Steven F. Messner, and Jianhong Liu (2007). "A multilevel analysis of the risk of household burglary in the city of Tianjin, China."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7:918-937.

A Study of Factors for Criminal Victimization in South Korea

Kim, Joon-Ho* · Park, Hyun-Soo** · Park, Song-Hoon***

This study examines to find out factors for criminal victimization in South Korea. Reviewing victimization theories, we drew several research questions. (1) Will the individual crime opportunity factors (attractiveness, exposure and guardianship from lifestyle/routine activity theory) will affect criminal victimization? (2) Will the contextual indicators (residential instability, informal control, formal control and proximity from disorganization theory) affect criminal victimization? (3) How are influenced criminal victimization by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and structural effects with using HLM methods?

The findings of present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age' and 'exposure' are observed for criminal victimization in individual level. Secondly, 'proximity' is the most important among contextual factors, and then 'formal control' is also significant statistically. Thirdly, the hierarchical analysis indicating that 'proximity' condition the impact individual factors for risk of both violent and sexual victimization. In short, rather than criminal victimization is affected by individual or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respectively, it is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individual and contextual factors.

❖ Key words : lifestyle/routine activity theory,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proximity, multilevel models, interaction terms

투고일 : 2010. 8. 26 / 심사(수정)일 : 2010. 9. 28 / 게재확정일 : 2010. 9. 28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Korea University
** Ph. D. Lecturer, Korea University
*** Ph. D. Candidate, Korea University